

# 퍼스트 전월세 권리보험 청약서

##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 귀중\*

1. 본인은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이하 “회사”)과 아래의 내용에 따라 권리보험을 청약 함에 있어 「퍼스트 전월세 권리보험 보통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청약합니다.

2. 본인은 이 청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청약서 앞면 상 “꼭 알아야 할 사항”, 청약서 뒷면 상 “유의사항” 및 “보통약관 주요내용” 포함)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권리보험 청약 시 해당 상품설명서를 교부 받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자필작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보험계약자(대리인)      (서명/인)

1. 보험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2. 피보험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3. 보험가입금액(임차보증금액)							
4. 보험시기	증권발행일(또는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보험의 효력 발생						
5. 보험의 목적	목적부동산의 표시	(건물)					
		(대지)					
	소유자 (임대인)			임차권취득자 (임차인)			
임대차잔금일/종류		년	월	일자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반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 꼭 알아야 할 사항

#### ■ 보험에 가입할 때

- 청약서 약관은 청약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관은 보험증권과 함께 교부됩니다.
- 보험료는 청약의뢰 시 납부하며,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권리조사 비용(11,000원)은 보험료가 아니므로, **철회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청약서 제출 후 보험증권이 교부될 때, 권리조사 비용은 보험료에 충당됩니다. **보험계약자(대리인)**      (서명/인)
- 권리조사에 따른 청약의 승낙, 거절, 철회와 보상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상의 예외 포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를 전제로 **증권발행일(또는 확인서 발행일)**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의 경우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완료**되어야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 ■ 보험에 가입한 후

-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또는 다른 보험에 가입할 경우 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

■ 청약율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http://firstam.co.kr>)에서 청약철회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유선(☎ 02-3144-2470)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성명:	(서명/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	(서명/인)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 성명:	(서명/인)
법정대리인(친권자)관계( ) 성명:	(서명/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이 서명한 경우 >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1. 가입자는 청약서 작성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보통약관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알려야 할 사항은 계약체결 여부와 손해를 부보하는 중요사항이므로 피보험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라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리의 하자 이외에는 일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은 회사에 직접 송금을 하거나,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통약관 주요내용]**

퍼스트 전월세 권리보험의 전체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약관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요부분을 발췌 하였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함)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약서에 명시된 권리조사 비용을 제외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대출계약철회와 관련하여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아래의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와 달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나 피보험임차권이 아래 각 목의 사유에 의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차권과 관련된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및 임대인의 신분에 관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를 위조하여 피보험임차권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사기·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민법 제 1004 조에 따른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피보험임차권에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또는 임대인의 이중계약으로 인하여 피보험임차권에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 다. 무능력(임대인 본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의사 및 행위무능력) 또는 무권대리(임대인의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임차권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 목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이후 우선하는 권리(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등기부상 등록되는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등기공무원의 등기 오류 및 하자 있는 행정 절차에 따라 임대인의 소유권에 발생한 하자로 피보험임차권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② 회사는 보험증권상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는 별도로 제1항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임차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가압류, 가처분, 인지세, 송달료 등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을 의미) 및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피보험자의 청약을 대리하는 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 증권발행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증권발행일자 이후 목적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되는 권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권리 등을 의미)
  3. 정부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금지하는 법령(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령을 포함) 및 법률 위반에 따른 손실 및 손해
  4. 법령에 따른 목적부동산의 수용, 환매, 몰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제한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5.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나 피보험임차권 또는 목적부동산의 하자, 제한, 부담, 불리한 청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제한으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
    - 가. 보험금 청구인이 설정, 부담, 인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동의하여 발생한 권리제한
    - 나. 보험금 청구인은 알고 있으나, 회사는 알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보장이 개시되는 일자 이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권리제한
    - 다. 보험금 청구인에게 결과적으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권리제한
    - 라. 보험금 청구인이 목적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가액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권리제한
  6. 파산, 회생,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한 청구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91 조 및 민법 제 406 조에 따른 법률행위 사해행위에 의해 취소되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7. 대한민국 이외의 장소에서 제기하거나 주장하는 소유권이나 피보험임차권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8. 전쟁, 폭동, 혁명, 내란, 사변, 테러, 소요, 정부조치, 국유화, 천제지변 및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회사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9.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 퇴직금청구권, 산업재해 보상청구권 등 각종 사회보험료 청구권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0. 대한민국 통일에 따른 소유권이나 피보험임차권 회복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 ② 아래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는 이 약관의 부보 범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적기록상 증권발행일자까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금 및 부과금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
  2. 공적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목적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나 그 점유자에 대한 질의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 245 조에 의한 취득시효 등의 사항, 기타 사실, 권리 및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법령상 이미 부여, 부과되었거나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11 조와 민법 제 320 조에 의하여 채권변제의 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장차 부여, 부과될 용역, 노무 및 물품 관련 제한이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4. 증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 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4 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5. 임대차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건사항 및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  
지점장 최명석